

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목적)

은혜돌봄재가복지센터를 통한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제공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0조 (이용계약자)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1조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서비스 의뢰를 받는다.
2. 의뢰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 등을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적인 사유로 서비스 일정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으로 본인 또는 타인(보호자, 요양보호사)등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하도록 한다.

제12조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 등

제13조 (계약기간)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

게 확인 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제15조 (기관의 의무)

1. 기관의 의무

-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③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의 의무

제16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재가방문(요양 및 목욕) 서비스 전 재가방문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는 재가방문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 하여야 한다.
(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5.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재가방문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제17조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6일 06: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욕구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구분	서 비 스 내 용
방문요양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이용하기, 배설도움 등 . 나. 가사 일상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 활동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 및 인지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마.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신체능력 잔존유지를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준비, 목욕 전 후 상태관찰(혈압, 배뇨, 배변, 욕창, 피부색,얼굴색 관찰 상태변화), 이동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몸 단장,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기타	기관은 수급자에게 필요한 기타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부당업무)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일이나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요양보호사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18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본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 부터 지급.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6%,9%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건강보험 자격기준에 따라 적용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제19조 (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0조 (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비용과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급대상자(보호자)의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서비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1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본 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등급, 급여내용, 자격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서비스 내용이 증감되었을 경우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장기요양서비스이용 본인부담금은 본 기관이 정하는 계좌에 다음달 25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 단, 2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납부계좌번호 : 농협 351-0766-9723-73 은혜돌봄재가복지센터

제22조 (이용료 비용의 변경)

1. 서비스 수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2.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법조항에 따르고 일반 사항은 기관에서 결정한다.

제23조 (이용료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계약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해당요건서비스 내용 증감의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등

2.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신규 및 갱신계약 → 계약자 상담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 통보 → 서비스 실시
② 수가 및 자격기준변경 → 변경내용 안내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 통보 → 서비스 실시

제 5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 24조 (목적)

본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수급대상자에게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전 도모 및 그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기관은 수급대상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급대상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범위선택과 책임을 분명히 하여 건전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과 정착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5조 (서비스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욕구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구분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이용하기, 배설도움 등 나. 가사 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 활동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 및 인지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마.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신체능력, 잔존유지를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기타	기관은 수급자에게 필요한 기타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일상생활서비스지원은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26조 (장기요양급여비용)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 1~5등급 인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비용으로서,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산정된 수가를 의미한다.

제27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분류번호	구분	2023년	2024년	기초	일반15%	감경40%	감경60%
가-1	30 분						
가-2	60 분	23,480	24,120	0	3,618	2,170	1,447
가-3	90 분	31,650	32,510	0	4,877	2,925	1,950
가-4	120 분	40,280	41,380	0	6,207	3,724	2,482
가-5	150 분	46,970	48,250	0	7,238	4,342	2,895
가-6	180 분	52,880	54,320	0	8,148	4,888	3,259
가-7	210 분	58,930	60,530	0	9,080	5,447	3,631
가-8	240 분	65,000	66,770	0	10,016	6,009	4,006

1.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
2.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3. 수급자의 신체,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수급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1부터 가-3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제28조 (방문목욕 급여비용)

구분	분류	24년수가	15%	9%	6%	기초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60분 이상	84,670	12,701	7,620	5,080	0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40분 이상 60분 미만	67,740	10,160	6,090	4,060	0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0분 이상	76,340	11,451	6,870	4,580	0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40분 이상 60분 미만	61,070	9,160	5,496	3,664	0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60분 이상	47,670	7,150	4,290	2,860	0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분 이상 60분 미만	38,130	5,719	3,431	2,287	0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또는 목욕의자를 이용하여 목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3.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4. 차량 이용 방문목욕

①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② 욕조, 급 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차량 내에서 전신입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③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전신입욕을 제공 하는 경우에는 “나-1”의 90%를 산정한다.

④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가 60분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5.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

①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② 수급자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③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 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6. 방문목욕(이동목욕차량이용)

분 류	금액(원)
① “이동목욕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60분	84,670
② “이동목욕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40분	67,740

①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활동지원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적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③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④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

- 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 ⑤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1회 까지 산정 가능하다.
-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 •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⑥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⑦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제29조 (본인부담금 및 공단부담금)

1.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 15%

-의료, 감경대상자 : 6%, 9%

- ▶ 감경대상자 : ① 의료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②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 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